

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조례

제정 2010년 3월 18일 조례 제1086호
일부개정 2018년 5월 11일 조례 제1662호
(제명개정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5. 11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 따른다. <개정 2018. 5. 11>

제2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· 운영 <개정 2018. 5. 11>
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 · 통합 운영하는 시설을 “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”(이하 “운영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개정 2018. 5. 11>

② 운영센터는 안전성 · 효율성 · 확장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둔다.

제4조(운영센터 기능)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8. 5. 11>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 · 운영
2.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, 가공처리, 서비스제공
3. 운영센터내 정보통신 장비, 전기시설 등의 보안 및 정보보호
4.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

제5조(관리 · 운영) ① 시장은 운영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두거나,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·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·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

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조례

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1>

②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 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, 또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1>

④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· 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 삭제 <2018. 5. 11>

제7조 삭제 <2018. 5. 11>

제3장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· 운영 <개정 2018. 5. 11>

제8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“오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<개정 2018. 5. 11>

1.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·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4.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

제9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 5. 11>

1. 오산시 관련 부서 공무원

2.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

3.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사

4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

5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
6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. <개정 2018. 5. 11>

⑥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,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때,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· 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관계기관의 협조)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 기관 ·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 · 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1>

제12조(실무협의회 운영)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, 관련 기관 ·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· 운영할

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조례

수 있다. <개정 2018. 5. 11>

제13조(수당 등)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 삭제 <2018. 5. 11>

제15조(홍보물 제공) 시장은 운영센터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객에게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타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회원
2. 관내 유치원, 어린이집 및 초 · 중 · 고교 학생
3.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
4. 그 밖에 선거권이 없는 자

[본조신설 2018. 5. 11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5. 11 조례 제166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“오산시 유시티통합운영센터”는 “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”로 본다.

제3조(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“오산시유시티사업협의회”는 “오산시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”로 본다.